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대구대학교 차세대반도체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계명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2023년 11월 28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구대학교 차세대반도체사업단

단장 김경기

2023.11.28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계명대학교 미래자동차사업단

단장 정용주

2023.11.28

대구대학교 차세대반도체사업단과 계명대학교 미래자동차사업단은 미래자동차 분야 및 미래자동차 관련 반도체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대구대학교 차세대반도체사업단과 계명대학교 미래자동차사업단 간의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 분야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1.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2.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자동차와 관련 반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

1. 교육과정 자문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관련 산·학 협력 기획, 공동연구 개발
3.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교류 및 서비스에 협력
4. 양 기관의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교환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의한 사항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공동연구와 교류활동으로 인지된 제반 기밀사항을 양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른다.

제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종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시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6조(해지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협약 내용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일방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상당한 기간(1개월)을 정해 그 시정을 서면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당해 협약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7조(권리 · 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8조(협약 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구대학교 차세대반도체사업단과 계명대학교 미래자동차사업단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